

#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5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9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하수도 사용료,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 및 준용사항을 일부 반영·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 및 준용사항을 신설·반영하여 하수도 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업무처리 하고자 함. (안 제27조2, 제27조3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4월 30일 ~ 5월 20일 (20일간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상하수도과**

##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소멸시효) 사용료,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용료, 연체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

제27조의3(준용)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, 분뇨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」의 예에 따른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하수도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하수도과장 이광섭
	팀장 직위·성명	하수행정팀장 홍현수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홍현수 (790-5442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<신   설>	<p><u>제27조의2(소멸시효) 사용료,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용료, 연체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</u></p>
<신   설>	<p><u>제27조의3(준용) 공공하수도 사용료 접용료, 분뇨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」의 예에 따른다.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민법

제163조(3년의 단기소멸시효)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 <개정 1997.12.13.>

1. 이자, 부양료, 급료,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

### ■ 지방재정법

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-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.